

# 정관

2024. 04. 18.

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

#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관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 칭한다.

**제2조(소재지)**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**제3조(목적)** 본회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고엽제법" 이라 한다)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·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(이하 "고엽제 관련자"라 한다)로서 본회에 가입된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, 고엽제 관련 피해연구 및 참전국간 교류협력·정보교환 사업과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국가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0. 8. 18. 개정>

**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** ①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특정 정당의 정강, 정책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 본부임원, 지부장, 지회장은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,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.

③ 본회의 임원 및 지부장,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해임된다.

**제4조의2(법률 및 정관 준수 의무)** 본회는 고엽제법 및 이 정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5조(사업)** 본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고엽제관련자 상호간의 상부상조<2020. 8. 18. 개정>
2.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의사업
3.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
4. 호국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사업
5. 월남참전 기념행사 및 조형물 건립 사업
6. 고엽제관련자 사망자 유족돕기 사업
7. 월남(베트남) 참전국간 교류협력 및 참전지역 내 고엽제 관련 피해연구 및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사업
8. 월남(베트남)전쟁 참전용사 및 고엽제관련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전우들의 명예선양과 권리보호사업
9.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에 기여
10. 대국민 안보교육 및 홍보사업
11. 깨끗한 국토보존을 위한 산림사업, 조경, 임목폐기물 재활용, 벌채, 환경감시 및 자연보호 운동
12. 고엽제관련자의 권리향상 등을 위한 경비업(2024. 4. 18.변경)
13. 고엽제관련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의약품 도매업(2024. 4. 18.변경)
14.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사업(2024. 4. 18.변경)

**제5조의2(수의사업)** ① 제5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② 수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고엽제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.
- ③ 수의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받고 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수의사업 수익금은 회원의 복지, 단체의 운영, 그 밖에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,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

산하지부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,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 <2021. 5. 21.개정>

**제6조(감독)** 본회의 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시정지시와 처분을 할 수 있다

## 제 2 장 회 원

**제7조(회원의 자격)**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은 고엽제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·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2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3.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4.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자행한 자

③ 제2항 제3호, 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⑤ 운영관리규정 제5장 제18조에 의거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탈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로 하며, 재가입시에는 제3항에 따른 지부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의결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2020. 8. 18. 신설> <2022. 05. 13. 개정>

**제7조의2(준회원)**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.

**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** ①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제반결의에 따르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.  
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에 등록하되 동시에 1개 이상의 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.  
③ 본회의 규정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, 2년 이 경과된 후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  
④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직원으로 임용과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
**제9조(징계)**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본부징계위원회와 지부징계 위원회에서 각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, 임직원, 대의원을 징계 처분 할 수 있다.  
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.  
③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9조의2(포상)** ① 회의 발전과 결속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부 및 지회 또는 회원에게는 대·내외 포상과 추천을 할 수 있다.  
② 본회의 발전에 대·내외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 
③ 포상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 3 장 조 직

**제10조(조직)** ① 본회에 본부, 지부 및 지회를 둔다.

② 지부는 서울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, 각 도에 두고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. 국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 50명 이상 거주하는 국가에는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.

③ 지회는 시·군·구(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.)에 두되, 단일행정구역 내 회원의 수가 50인이 안되거나 지회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시·군·구와 통합하여 연합지회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지부·지회의 명칭 및 위치)** 지부·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부는 본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 또는 도 명칭을 쓰되 시·도지부 및 특별자치시·도로 한다.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불이 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.
2. 지부는 서울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 도의 관할 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소재지에 둔다.
3. 지회는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시·군·구지회로 하고 시·군·구의 관할 소재지에 둔다.

## 제 4 장 임원 및 직무

**제12조(임원)** ① 본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
3. 이사 11인 이내

4. 감사 2인

5. 사무총장 <2022. 05. 13. 신설>

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이 신임(信任)하는 기간으로 한다. <2022. 05. 13. 개정>

**제13조(명예회장 등 예우)** ①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
② 직전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에 준하는 의견 상 예우를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임원의 선출)**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② 부회장 및 감사 각 2명 중 각 1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으로 할 수 있다.

③ 본회의 회장 등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2022. 05. 13. 신설>

**제15조(사무총장)**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직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.

**제16조(임원의 자격)** ①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.

②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겸직금지)**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원의 불신임)** ① 총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.

**제19조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권한을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부회장이, 상임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비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삭제

⑤ 삭제

**제20조(이사의 직무)** 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

**제21조(감사의 직무)** ① 본회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고 회계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

2. 이사회 운영과 사무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산하조직에 대한 감사

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③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참석·발언할 수 있다.

④ 본회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연중 시행하고,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, 특별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 시행할 수 있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.

- 제22조(지부 및 지회)** ① 본회의 지부에는 지부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또는 조직국장 1인을, 지회는 지회장 1인과 사무장 1인을 둔다. 다만, 필요한 경우는 약간의 부서장을 둘 수 있다.
- ② 지부장은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, 지회장은 2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.
- ③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의 원에 따라 사임하거나 제9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와 제22조의2 ③항에 따라 해임, 면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단, 임기 중 궐석자에 대한 후임자는 잔여임기로 하되,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2020. 8. 18. 개정>
- ④ 지부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사무국장 또는 조직국장은 지부장이 임면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지회장은 지부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.
- ⑦ 사무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지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 업무를 관장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 사고지부는 관리이사 또는 인접지역 지부장이 겸임토록 회장이 임명하여 지부를 관리토록 하고, 지부의 정상화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⑨ 연임자의 경우 인사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결정한다. <2020. 8. 18. 신설>

- 제22조의2(결격사항 등)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각급회의 임·직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범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
7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- ② 사면, 복권으로 그 형이 실효된 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회의 임·직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있다.
  - ③ 지부장, 지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임 및 면직처리 하여야 한다.
    1.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
    2.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이 있거나 내부의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단체 운영이 곤란 할 경우

**제22조의3(직무대행)** 제22조의 지부장 및 지회장의 유고에 따른 직무 대행 이외의 직무대행자의 임·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5 장 총회

**제23조(총회의 구성)** 본회의 총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,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4조(총회의 소집)**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 
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  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.

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최 14일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전신·전화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14일전에 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한 회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**제25조(총회의 기능)**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. 본회 및 지부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②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26조(대의원)** ① 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대의원의 총수는 60인 이상 90인 이내로 하되 서울·경기지부는 8명, 다른 시·도지부는 각각 5명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1명으로 한다.<2021. 5. 21. 개정>

③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27조(총회의결 제척)** 본회의 회장 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다.

1.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한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 처리가 있을 때

## 제 6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
제28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
제29조(이사회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삭제<2021. 5. 21. 개정>
2.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
3. 사무총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6. 사업계획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회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
8. 지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9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10. 지부장 임·면 추인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중요한 사항

② 이사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30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한다.

제31조(서면의결 금지)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단, 천재지변, 전염병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
**제32조(운영위원회)** ① 지부와 지회의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지부장, 사무국장, 부서장,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지부는 지부장이, 지회는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수는 지부는 23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세종특별자치시지부,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및 시·군·구지회는 13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홀수로 한다. 단, 관할 회원대비 운영위원회 정족수 구성이 어려운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부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⑥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서면 또는 통신으로 소집한다.

⑦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보고한다.

1.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2.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 3. 지부 및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4. 지부 및 지회의 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
  5. 삭제<2021. 5. 21. 개정>
  6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(예산 및 결산 포함)
  7. 기타 중요한 사항
- ⑧ 7항 4호의 안건 중 사안이 긴급한 경우 추인할 수 있다.

## 제 7 장 재정 및 회계

**제33조(재산)**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임원진이 출연한 재산과 장래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사무실집기 기타 비품 등으로 한다.

④ 재산취득 및 매각의 경우 시·도지부 및 지회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자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관리규정에 둔다.

**제34조(재정)**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
2. 후원찬조금 또는 기부금
3. 수익사업 수익금
4. 기타수익금
5. 삭제



② 1항 2호의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(2024. 4. 18. 개정)

**제34조의2(수익금)** 수익금은 고엽제법 제13조(사업)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수익금의 사용) 등 법률에 명시된 용도 외에 지분에 따라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,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<2020. 8. 18. 신설>

**제35조(회계연도)**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### 제36조 <삭제>

제37조(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) ① 총회 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8조(변상책임) ① 본회 및 지부, 지회의 회계책임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밖의 규정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본회 및 지부, 지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,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 책임자 또는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 책임을 진다.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.

④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 책임자 및 직원은 스스로 사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39조(법인결산)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본부, 시·도지부, 지회 및 사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감리를 거쳐 관련법에 의거 결산신고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 보고한다.<2021. 5. 21. 개정>

1.~8. 일괄 삭제 <2021. 5. 21. 개정>

**제40조(예산안 편성 및 결산보고)**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부는 총회에 부의할 예산·결산 및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기 종료 후 3월31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감사 후 이사회 및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41조(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)** ① 당해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1.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적립금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.

## 제 8 장 사무 및 행정

**제42조(사무처)** ①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산하에 기획실, 복지사업국, 조직선도국, 홍보국, 호국안보국과 구급대를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수익사업 법인을 둘 수 있다.

④ 본회는 뇌경색증 등 응급환자가 수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단체로 본부 및 지부, 지회에 환자후송을 위해 긴급차량인 구급차량 운영을 위한 구급대를 운영한다.

⑤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43조(임원 및 직원 보수)** ① 본회의 상근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급여 내지 복지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단,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② 임·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한다.

**제44조(지부사무소설치등기 및 사무소이전등기의 보고)** 「민법」 제50조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부사무소설치 등기 또는 사무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해산 및 신고)**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25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구성원 재적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
1. 고엽제법에 따른 설립목적이 소멸되었을 때

2.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을 때

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해산 연월일

2. 해산사유

3. 해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

4.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사항

③ 청산인은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

2.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

3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

4. 해산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

5. 해산을 결의한 총회록<2020. 8. 18. 개정>

④ 본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산예정일, 해산의 원인,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1부
2.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
3. 신청 당시 정관 1부

**제46조(해산 후 재산정리)**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중여토록 한다.

**제47조(환경보호)** 제5조제11호의 깨끗한 국토보존을 위한 환경감시를 위하여 본회에 환경감시단을 두고 환경감시활동과 자연 보호운동을 수행토록 하고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48조(정관개정)**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9 장 보칙



**제49조(인장)** ① 본회가 사용할 인감과 직인의 모형은 불임 규격과 같이한다.

- ② 지부 및 지회의 직인은 등록된 직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③ 인장 분실 시 일간지 또는 지방지에 분실 공고 후 본부에 즉시 보고하고, 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민·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부는 지부장, 지회는 지회장이 책임자가 된다.

**제50조(규정)**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
**제5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)** 「고엽제법」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, 「고엽제법」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**제52조(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준수)**

본회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본 정관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**부 칙**

본 정관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**부 칙**

본 정관은 1999년 8월 14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**부 칙**

① 본 정관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본회 명칭 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로 변경 승인

②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, 지부장,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고, 단서사항은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부 칙**

본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**부 칙**

본 정관은 2004년 2월 1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**부 칙**

본 정관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### 부 칙

- ① 본 정관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 본회 명칭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변경 승인
- ②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, 지부장,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고, 단서사항은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본 정관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### 부 칙(2008. 4. 18)

- ①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, 지부장,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고, 제12조제2항을 적용한다. <2017.04.21. 오류 정정>

### 부 칙(2009. 4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, 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선출 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되, 제12조제2항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(2010. 4. 22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1. 5. 11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2. 5. 11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3. 5. 6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5. 7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5. 19.)
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제12조(임원)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한 연임 임원의 중임은 현 회장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.

부 칙(2016. 5. 27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25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3. 22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0. 19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5. 15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8. 18.)
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22조에 대한 경과조치) 제22조 제3항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지부(회)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(2021. 5. 21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5. 13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 4. 18.)

본 정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